



개인적 법익 침해

| | |
|----------------------|----|
| 제1장 사생활 침해 | 14 |
| 제2장 명예훼손 | 27 |
| 제3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 29 |
| 제4장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 34 |
| 제5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 35 |
| 제6장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 37 |
|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 39 |

제1장 사생활 침해

사례. 1

| | |
|----------|------------------|
| 의결번호 | 제2019-202호 |
| 매 체 명 | 서울경제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3월 12일 31면 |
| 기사제목 | 광주의 분노 |

1. 보도내용

「광주의 분노」 제하의 사진

서울경제

2019년 03월 12일
31면 (사회)



광주의 분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핑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가운데 사진). 이날 전씨가 32년 만에 광주를 방문하자 시민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그를 규탄했으며(왼쪽 사진) 법원 옆 동산초등학교 학생조차 창문 밖으로 "전두환은 물러가라"를 외쳤다.
/광주=오. 기자

(17.8*13.0)crr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전두환 전(前) 대통령을 향해 비난 구호를 외치는 초등학생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 | |
|----------|---------------------------------|
| 의결번호 | 제2019-214호 |
| 매 체 명 | 스포티비뉴스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3월 6일 TV연예면 |
| 기사제목 | [오늘의 연예]슈, 자숙하는줄 알았더니 한가로이 해외여행 |

1. 보도내용

「[오늘의 연예]슈, 자숙하는줄 알았더니 한가로이 해외여행」 제하의 사진



[스포티비뉴스=장 기자]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S.E.S.로 활동하며 '원조 요정'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슈 씨. 최근엔 8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가 알려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번 실수가 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 의사를 밝혔던 슈. 하지만 그녀가 다시 비난 여론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바로 지난 6일 슈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푸른 바다를 보며 한층 밝아진 모습의 슈 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요. 이 시기가 비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선고를 받은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외여행을 떠나고 사진까지 게재한 것은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 비난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해외 상습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가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미성년자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3

| | |
|----------|-----------------------|
| 의결번호 | 제2019-449호 |
| 매 체 명 | 인터넷 영남일보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5월 13일 국제면 |
| 기사제목 |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

1. 보도내용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제하의 사진

영남일보

2019년 05월 13일
(국제면)

아프리카서 구출 인질 韓人여성 佛 도착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가운데)과 프랑스인 남성 2명이 11일 프랑스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4

| | |
|----------|-----------------------------|
| 의결번호 | 제2019-582호 |
| 매 체 명 | 뉴스시스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6월 10일 연예면 |
| 기사제목 |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최진실 딸 |

1. 보도내용

「최준희 "사랑보다 값진 것은 없다"...최진실 딸」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배우의 미성년자 자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5

| | |
|-----------------|-----------------|
| 의결번호 | 제2019-445호 |
| 매 체 명 | 광주타임즈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5월 14일 1면 |
| 기사제목 | ○○군 공직자 이래도 되나 |

1. 보도내용

「제○회 ○○○○축제 때인 지난 3일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센터 ○○○○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 농촌지도사가 담당과장인 ○모과장에게 대들며 먹살을 잡는 일이 벌어져 축제장 주변에 있는 군민들의 눈총을 쬐푸리게 해 공직자 기강이 무너지고 근무태도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중략)

한편 ○씨는 본인의 병에 심각성을 모르고 인정도 않고 행동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해온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병가를 내서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다름을 벌인 공무원 양 당사자의 성, 소속, 직위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이 중 일방이 정신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비록 공직기강해이를 지적한 기사라 할지라도 신원 및 정신과적 진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 | |
|----------|--------------------------------|
| 의결번호 | 제2019-210호 |
| 매 체 명 | 인터넷 금강일보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3월 22일 사회면 |
| 기사제목 |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

1.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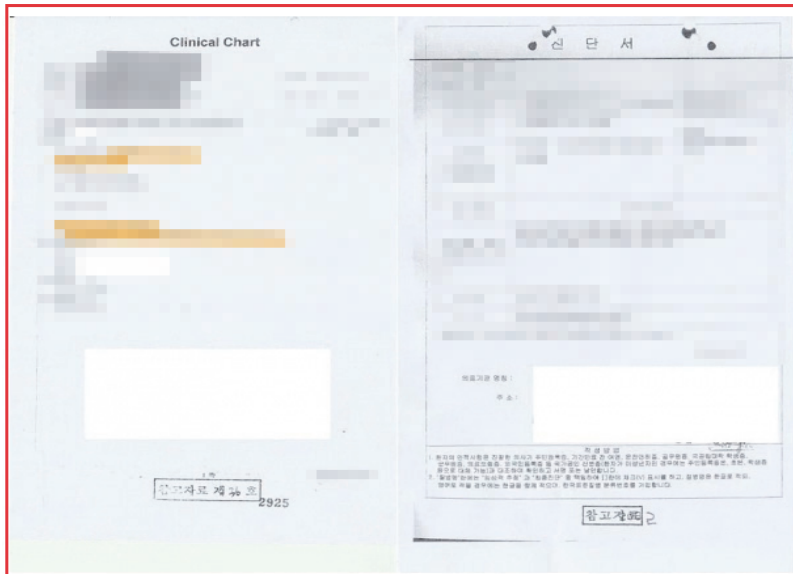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제하의 사진



HOME > 사회 > 사회일반

안희정 부인 민주당 "김지은 허위진단서"라며 문건 공개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03.22 14:46 | 댓글 0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당 씨가 22일 SNS에 공개하며 허위진단서라고 주장한 김지은 씨의 진단서 2건.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추가함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재판 중인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 실물을 공개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산부인과 등 질병자료가 담긴 진단서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점, 해당 진단서 실물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7

| | |
|----------|---------------------------|
| 의결번호 | 제2019-370호 |
| 매 체 명 | 뉴스스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4월 10일 |
| 기사제목 | 물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 |

1. 보도내용

「물몬교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씨가 과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당시 동성애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물몬교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보수 성향의 종교로 불리운다. ○씨의 경우 물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중략)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은 “이들이 ○씨 자택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시 동성행각을 짐작하게 하는 진술도 일부 받아냈다”고 했다. (중략)

○씨의 동성애 사실도 그대로 문혔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동성애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동성행각’,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비록 유명인의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당사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2장 명예훼손

사례. 8

| | |
|----------|----------------------------|
| 의결번호 | 제2019-61호 |
| 매 체 명 |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1월 18일 |
| 기사제목 |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

1. 보도내용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제하의 사진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from 'the Leader' (국회in, 지자체, 기관장 초대석, 인물 포커스, Hot 이슈). The article title is '김학래 이성미 해명, 8년 전 뭐라고 남겼나..' (Kim Hak-rae, Lee Seung-mi clarification, what did I say 8 years ago..). The author is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 and the date is '2019.01.18 12:31'. Below the title are social media sharing icons. A photograph of Kim Hak-rae, a man in a dark suit, is shown. The photo is credited to '사진=뉴스1'.

김학래가 8년 전 남긴 이성미에 대한 해명 글이 재조명 되고 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성 개그맨이 남성 가수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나 혼인하지 않고 미혼모로 생활하였고 이와 관련 남성 가수가 해명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남성 가수와 동명이인인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비록 동명이인에 대한 단순한 착각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과 함께 남성 개그맨의 초상을 게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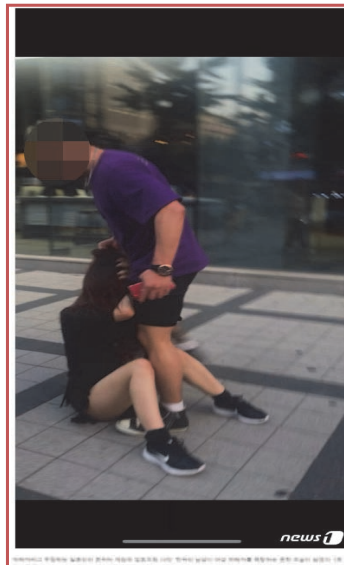
제3장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9

| | |
|----------|---------------------------------|
| 의결번호 | 제2019-1017호 |
| 매 체 명 | 동아닷컴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8월 24일 사회면 |
| 기사제목 |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

1. 보도내용

「한국인 남성, 日 여성 폭행 논란...경찰 진위 파악 중」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피의자의 전신 모습을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0

| | |
|----------|---------------------|
| 의결번호 | 제2019-257호 |
| 매 체 명 | 인터넷 파주에서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2월 28일 정치·사회면 |
| 기사제목 | (주)○○○○ ○팀장 구속 |

1. 보도내용

「(주)○○○○ ○팀장 구속」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파주시 출자기관인 ‘(주)○○○○’ ○○○○팀 ○ 모(○○)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략)

○○○○는 작년 결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월 15일 파주경찰서에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성, 나이, 소속 업체명, 직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1

| | |
|----------|--------------------------|
| 의결번호 | 제2019-797호 |
| 매 체 명 | 인터넷 중앙일보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7월 11일 사회면 |
| 기사제목 | 길고양이 때렸다가 직위해제 당한 고교 경비원 |

1. 보도내용

「길고양이 때렸다가 직위해제 당한 고교 경비원」의 제목

「아산 ○○○고, ○○세 당직 공무원 직위해제 (이하 생략)」의 부제목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길고양이를 때린 혐의로 고등학교 경비원이 직위해제 됐다.

11일 충남 아산의 ○○○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길고양이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공무원 (경비업무) A씨(○○)를 지난 10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중략)

그중 직접 목격자 학생이 있었고 소문이 사실인 걸 알게 되자 고양이들을 도와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울었고, (중략) 경비해주시는 아저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꼬리를 잡고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합니다”라고 했다. (중략)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학교 당국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소속 학교명, 직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사례. 12

| | |
|----------|----------------------------|
| 의결번호 | 제2019-258호 |
| 매 체 명 | 인터넷 총남일보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3월 18일 지역소식면 |
| 기사제목 | 천안 '처제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15년 구형 |

1. 보도내용

「한 집에 살던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전 ○○당 천안○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A(40)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 동안 처제 B씨를 상대로 총 94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 중 5회는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강요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검찰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모 정당의 전(前) 청년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하면서 성폭력 가해자의 소속 정당, 지역구, 직책, 나이 등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가해자와 인척(姻戚)관계인 성폭력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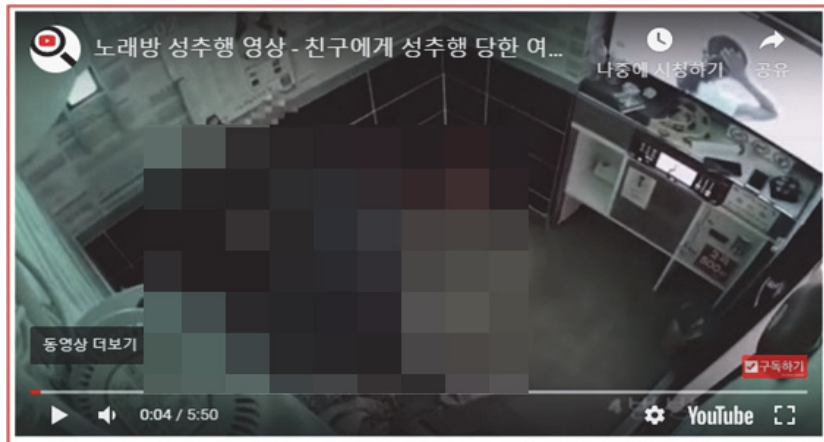
제5장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사례. 13

| | |
|----------|-----------------------------------|
| 의결번호 | 제2019-1051호 |
| 매 체 명 | 놀라운뉴스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8월 13일 REAL VIDEO면 |
| 기사제목 |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 포착영상 |

1. 보도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성추행 사건 영상 CCTV 포착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 가해자의 범행과정을 영상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신원공개

사례. 14

| | |
|----------|----------------------|
| 의결번호 | 제2019-1174호 |
| 매 체 명 | 놀라운뉴스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9월 23일 NEWS면 |
| 기사제목 | 지금 난리난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

1. 보도내용

「지금 난리난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성년자인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소년법」 제62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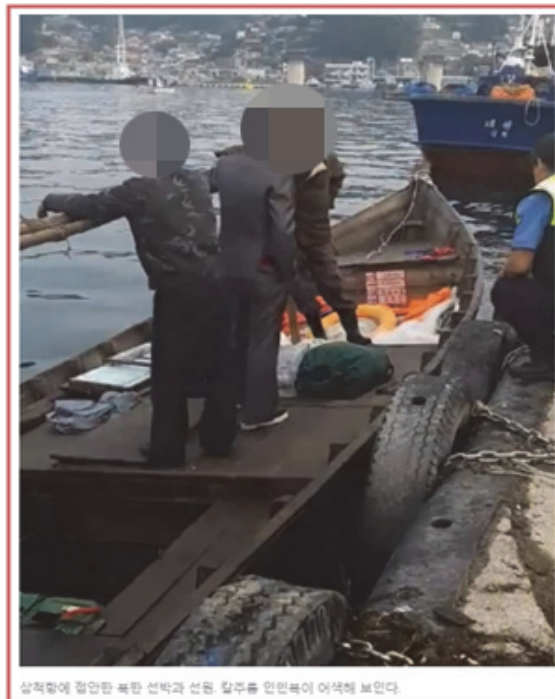
제7장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사례. 15

| | |
|----------|---------------------------------------|
| 의결번호 | 제2019-804호 |
| 매 체 명 | 인터넷 미래한국 |
| 보도일 및 위치 | 2019년 7월 11일 국제·안보면 |
| 기사제목 |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

1. 보도내용

「[추적리포트] 삼척항 北어선은폐 축소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북한 목선 입항 경로와 목적 등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